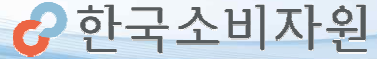


이 자료는 **6월 5일(수) 조간부터** 사용하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6월 4일 12시)

희망의 새시대

소비자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 보도자료



2013년 6월 3일(월)  
홍보팀 (☎3460-3222~4)

담당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하정철 팀 장(☎3460-3411)

이조은 조사관(☎3460-3416)

### 유기농화장품 허위표시·과장광고 많아 소비자 선택에 혼란 - 조사 제품의 70%가 화장품법 등의 표시·광고 기준 위반 -

최근 유기농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유기농화장품의 시장규모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유기농 표시위반과 허위·과장 광고 사례가 빈번해 소비자들이 제품 선택에 혼란을 겪고 있어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등을 포함한 사전·사후관리 제도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시중에 유통 중인 유기농화장품 50개(국내산 24개, 수입 26개)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려 35개(70%)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화장품법」 또는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 제품은 대부분(24개, 92.3%)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관련 규정 위반 제품 현황 >

구 분	국산화장품	수입화장품	계
규정 준수	13	2	15(30%)
규정 위반	<b>11</b>	<b>24</b>	<b>35(70%)</b>
계	24	26	50(100%)

위반 유형을 보면 유기농 원료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21개로 가장 많았다. 유기농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표시·광고한 제품이 11개, 이외에 유기농 원료함량이 95%에 미달하면서 제품명에 유기농 용어를 사용한 제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정 기준(유기농함량 10% 이상)에 미달하면서 유기농 제품으로 표시·광고한 제품이 각각 5건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유기농화장품을 표방한 제품들이 유통되는 것은 국내에 유기농 여부를 심사하고 사후 관리하는 제도가 부재한 탓도 있다. 또한 유기농 원료 함량 95% 이하의 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표시 기준이 없는 것도 허위표시·과장광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확보를 위해서도 유기농 함량에 따라 표시방법을 달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국내에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화장품제조업체가 해외 인증기관을 이용해야 하므로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고 무엇보다 다양한 해외 유기농 인증마크에 대한 정보가 없는 소비자는 선택에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그 결과 35개 중 32개 업체가 약 122억원에 상당하는 총 70만개의 제품을 회수하여 표시를 개선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기농화장품 허위표시·과장광고 근절과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유기농화장품 사전·사후관리 제도 마련 ▲국내 인증기관 지정 ▲유기농원료 함량기준 강화 ▲소비자 지향적인 표시제도 도입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는 유기농화장품 구입 시 ‘천연’, ‘자연주의’ 등의 용어와 혼동하지 말아야 하며 원료함량 등 제품표시 사항을 꼼꼼히 살펴 유기농 제품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 현행 규정을 위반한 제품이 무려 70%

시중에 유통 중인 유기농화장품 50개(국산 24개, 수입 26개)를 대상으로 유기농 관련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70%(35개)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남.

\* 「화장품법」,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이하 ‘가이드라인’으로 표기)

< 표시·광고 규정 위반 현황 >

위반 여부	국산화장품	수입화장품	계	
위반항목 없음	13	2	15(30%)	
위반	1개 규정	8	<b>15</b>	<b>35(70%)</b>
	2개 규정	11	<b>14</b>	
	3개 규정	4	<b>5</b>	
	6개 규정	1	<b>1</b>	
합 계	24	26	50(100%)	

「가이드라인」 위반 제품이 28개, 「화장품법」 위반제품은 25개 제품이었고, 양 규정을 중복 위반한 제품도 18개로 확인됨.

< 규정별 위반 현황 >

위반 규정	국산화장품	수입화장품	계
가이드라인	6	22	<b>28</b>
화장품법	8	17	<b>25</b>

\* 18개 제품은 「가이드라인」 과 「화장품법」 을 중복 위반

## □ 유기농 원료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가장 많아

위반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① 용기 또는 포장에 유기농 원료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21개로 가장 많았음(가이드라인 제14조제2항 위반) ② 유기농 함량이 실제보다 더 높거나 유기농 원료만 사용한 것으로 오인케 표시·광고한 제품이 11개(화장품법 제13조제1항 위반) ③ 제품명에 유기농 표시를 넣으려면 유기농 원료 함량이 95%이상이어야 하나 이를 충족하지 못한 제품이 5개(가이드라인 제14조제3항 위반) ④ 유기농화장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기농 원료함량이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나 함량이 부족함에도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고 있는 제품이 5개로 확인됨(가이드라인 제12조 위반)

**< 유기농 관련 규정 위반유형 현황 >**

규정	위반 유형	국산	수입	계
가이드라인	용기 또는 포장에 유기농원료의 함량 미표시	3	18	21
	유기농 화장품 인정기준 미달	2	3	5
	제품명에 '유기농' 용어 사용 요건 미달	3	2	5
화장품법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7	4	11
	유기농 원료 함량 미표시	0	5	5

\* 중복 위반사항 반영

\* 개정된 화장품법을 참고하였으며, 경과규정을 적용

유기농 표시 이외에 「화장품법」의 필수 표시·기재사항을 준수하지 제품도 12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위반 제품 12개 중 수입화장품이 11개로 대부분이어서 수입화장품에 대한 관리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필수 표시·기재사항 위반 현황 >**

규정	위반 내용	국산	수입	계
화장품법	사용기한 또는 제조년월일 미기재 (제10조제1항제6호)	0	2	2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미기재 (제10조제1항제9호)	1	2	3
	필수기재사항을 한글로 표시하지 않음(제12조)	0	2	2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미기재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3호)	0	8	8
	성분표시 글자크기가 기준이하로 식별 어려움 (법 제10조제4항/시행규칙 제19조제6항)	0	2	2

\* 중복 위반사항 반영

\* 개정된 화장품법을 참고하였으며, 경과규정을 적용

\* 해당 표시사항이 한글이외의 언어로 기재된 제품 모두 법률위반으로 간주(화장품법 제12조 참조)

### □ 유기농화장품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

국내에 유기농화장품 여부를 사전 심사·확인하고 사후 관리하는 제도가 부재하다 보니 동 조사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천연·일반화장품이 유기농 제품임을 표방한 채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됨.

따라서 유기농 원료 재배에서 제품 생산, 인증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기농화장품 시장을 안정적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 □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필요

국내에는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이 없어 국내 화장품업체가 해외 소재 인증기관의 인증마크를 획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국가적 경제 손실은 물론 기업체의 부담 및 시간 비용이 상당함.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 인증기관의 인증마크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유기농화장품에 혼재되어 표시·광고되면서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이 제품 선택 시 혼란을 겪고 있음.

따라서 국내에도 유기농 인증기관을 설립해 제조업체들의 인증 수여를 용이하게 하고, 인증기관 및 마크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도모해야 함.

### □ 유기농원료 함량 기준 강화 필요

국내에서 유기농화장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같이 제품 전체 구성성분 중 10% 이상만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면 됨. 그러나 이는 외국 유기농 인증기관이 인정하는 유기농 함량기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이드라인」 및 「화장품법」을 개정하여, 유기농화장품 전체 성분 중 유기농 원료의 비율을 현재의 10%에서 최소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농산원료는 반드시 95% 이상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도록 함량기준을 강화하여 국제기준과의 조화는 물론 국내산 유기농화장품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IFOAM(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USDA(미국 농무성), Soil Association (영국토양협회), ACO(호주유기농인증기관)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 성분 중 95% 이상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한해 유기농화장품으로 인증함. 낮은 비율의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인증표시 수준을 달리하거나 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불허함.

※ 유럽연합(EU)

화장품 최초로 유기농 인증을 도입한 프랑스의 민간 인증기관인 에코서트(ECOCERT)를 비롯한 5개 기관이 유기농 인증기준(COSMOS- standard)을 공동 개발하여 2010년 1월부터 시행함. 동 기준에 따르면 유기농 화장품은 전체 성분 중 최소 20% 이상의 유기농 성분을 함유하도록 하고 있음.

## □ 소비자지향적인 표시제도 도입 필요

시중에 유통 중인 유기농화장품이 완제품에 대해 유기농 인증을 받았는지 일부 원료만 유기농 인증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구분 방법이나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이 제품선택에 혼란을 겪고 있음.

따라서 '기능성화장품'과 같이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은 '유기농화장품'이라고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강제하여 자연주의를 표방하거나 천연성분을 사용한 일반제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필수 기재사항)에 반영]

또한 유기농 원료 함량이 95% 미만인 유기농화장품의 경우, 표시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어 허위표시·과장광고의 원인이 되고 있음. 유기농 성분 함량정도에 따라 표시방법을 달리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해야 함.

※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표시 기준

- 유기농 원료함량 100% : '유기농 100퍼센트(%)'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 사용 가능 (제품명, 주표시면 등 어느 장소나 가능)
- 유기농 원료함량 95% 이상 :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 사용 가능 (제품명, 주표시면 등 어느 장소나 가능)
- 유기농 원료함량 70% 이상 95% 미만 :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 사용 가능 (제품명, 주표시면을 제외한 제품면에 표시 가능)
-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산물을 사용 :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 사용 가능 (원재료명 및 함량표시란에만 표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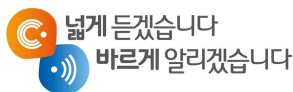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관련규정을 위반한 35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함. 그 결과 32개 업체가 이를 수용해 위반사항을 개선했음.

\* 제품 회수 및 표시개선 약 70만개(121억 7천만원 상당)

그러나 국내에는 유기농화장품 사전·사후관리 제도가 부재하고 표시기준이 취약해 향후에도 유사한 위반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유기농화장품 사전·사후관리 법규 마련 ▲국내 인증기관 지정 ▲유기농원료 함량기준 강화 ▲소비자 지향적인 표시제도 도입 등의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해 건전한 유기농화장품 시장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아울러 유기농화장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천연’, ‘자연주의’ 등의 용어와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유기농 함량 등의 제품표시 사항을 꼼꼼히 살펴 유기농 여부를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함.

- [별첨 1] 유기농원료 함량 미 표시 제품 현황
- [별첨 2] 유기농원료 함량(95%) 미달 제품 현황
- [별첨 3]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
- [별첨 4] 화장품법 기재사항 위반 현황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http://www.kca.go.kr)



[별첨1]

< 유기농원료 함량 미 표시 제품 현황 >

번호	제품명	판매원(수입원)	분류
1	퓨어템 퓨어베라 에센스	WELCOS	국내산
2	네이처런스 프롬 인텐시브 오르제닉 크림	웅진코웨이(주)	
3	블랜딩 페이스 오가닉 아르간오일	(주)난다모코스메틱	
4	마르게리따겔 화이트닝 세럼	(주)금비	수입
5	베이비로션 마돈나*	(주)마돈나코리아	
6	카렌둘라 베이비 로션	(주)더블류네트웍스	
7	칼렌둘라 크림*	(주)티인비	
8	프랑킨센스 퍼밍 넥크림	(주)메디엘	
9	퓨어 오가닉 아이 리프팅크림	(주)일신엠케이	
10	바닐라 차이 핸드앤바디로션	더라이프갤러리(주)	
11	베이스스 수분 바디로션	저먼코스메틱	
12	시백슨 스킨토너	비투오가닉 인터내셔널(주)	
13	퍼펙팅크림	(주)이노코스마	
14	오가닉 데이크림*	(주)제네시스네츄럴	
15	에코케어 데이나이트 크림	비엘렌다코리아	
16	톤(레몬 티트리 워드 위치 하젤)	이너페이스	
17	내추럴 페이스 토너	(주)오가닉솔루션	
18	프리미엄 베이비 로션	(주)로고나코리아	
19	리치 모이스처라이저 크림*	리코스	
20	로즈페이스 크림*	(주)미아내츄럴리	
21	모이스처라이징 로즈 넥타	룩시땅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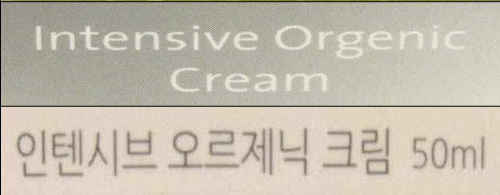

※ 유기농 함유량 표시가 한글이외의 언어로 기재된 제품 모두 포함(화장품법 제12조 참조)

\* 제품 5종은 화장품법상 유기농함량 표시 위반에도 해당(2012. 2. 24. 이후 제조·수입)



[별첨2]

< 유기농원료 함량(95%) 미달 제품 현황 >

브랜드 제품명	판매원(수입원)	제품 표시	유기농성분 함량**
퓨어가닉 에코크림 베이비	보령 메디앙스		전성분의 10.4%
네이처런스 프롬 인텐시브 오르제닉 크림	웅진코웨이(주)		전성분의 11.764%
ORGANIC SKIN 시벅슨 스킨토너	비투오가닉 인터내셔널(주)		물, 염 제외한 전성분의 12%
유기농 쉬어버터 뷔르키나 바디로션	(주)웰인터 내셔널	품명:로베아 래 코르 뉴트리티프 오 카리테 뒤 뷔르키나 세르티피에 비오 (로베아 유기농 쉬어버터 뷔르키나 바디로션) 프랑스천연유기농인증(에코서트/코스메바이오)	전성분의 10.9%
FORGANIC EARTH 아토나 모이스춰 크림	(주)한빛코리아		95% 함량미달 (제조업체 사정으로 정확한 함량 확인불가)

\* 제품명에 '유기농'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는 제품의 경우에 한함.

\*\* 제품에 표시된 함량, 표시가 없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확인된 함량


[별첨3]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

□ 유기농 및 천연성분비율 오인표시

제품명	판매원(수입원)	제품 표시	위반내용
베베드 포레 베이비 크림	유한킴벌리		천연유래성분 99.3%를 유기농 성분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표시
비오베베 수딩로션	(주)아모레퍼시픽		천연유래성분 99.94%를 유기농성분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표시
퓨어템 퓨어베라 에센스	WELCOS		유기농 알로에베라 파우더 함유는 0.5%인데, 제품 전체가 100% 유기농인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시
스킨베리 나뭇르 베이비 크림	(주)아벤트코리아		'바르는 유기농'이라는 표현으로 제품 전성분을 유기농으로 오인케 하는 표시

□ 유기농 함량 표기 상이

제품명	판매원(수입원)	제품 표시	위반내용
수분가득 알로에 퍼스트 에센스	(주)에뛰드		제품 포장의 표시 내용과 온라인 광고의 내용(유기농 원료 함량)이 상이함 제품 : 86.9%, 온라인 광고 : 91%
프랑킨센스 퍼밍 넥크림	(주)메디엘		제품포장과 온라인 광고 내용(유기농원료 함량) 상이함 제품 : 87%, 온라인 : 89%

□ 유기농화장품 요건 미충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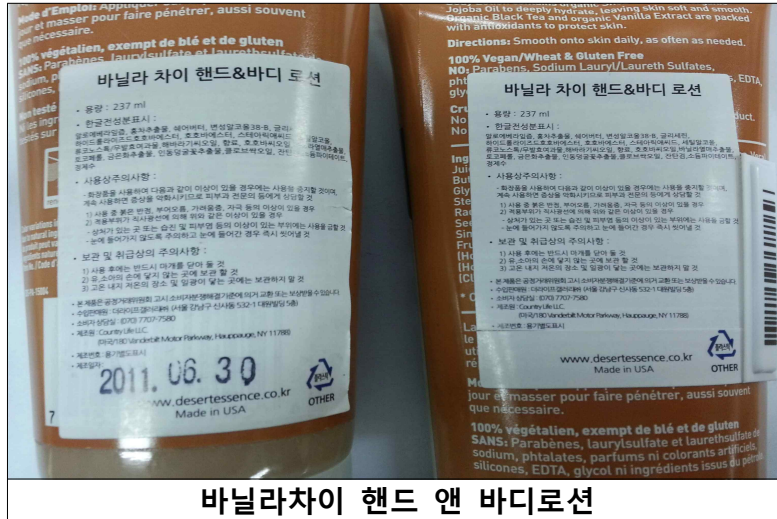
제품명	판매원(수입원)	제품 표시	위반내용
퓨리피앙 가든 릴리프 세럼	미즈온(주)	<p>• 퓨리피앙 가든의 유기농 레시피</p> <p>1. 더 안전하고 더 신성한 천연 유기농!</p> <p>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보호해주는 알로에 베라 잎          수분이 풍부해 피부에 부족한 수분과 영양을 가득 채워주는 케겟          비타민이 풍부해 피부를 건강하고 맑게 도와 주는 파슬리          피부 탄력을 증진 시켜주고 동안 피부로 가꾸어 주는 브로콜리</p> <p>2. 유기농 배려 원료!</p> <p>블루베리, 열대열매, 크랜베리, 블랙베리, 아사이 아자주올출          장수의 열매로 알려져 있는 베리 추출물 들은 피부를 청수 할 수 있게 도와주어          한층 더 젊어진 피부를 유지시켜줍니다.</p> <p>3. 유기농 인증이완?</p> <p>USDA          철저한 품질검사를 통해 유기농 성분이 95% 이상인 제품에만 부여되는 미국 농무부의 인증마크</p> 	
오트밀크 파운데이션 BB	아크네노모		
아토나 모이스춰 크림	(주)한빛코리아		
비타민 재생크림	(주)올리비아 내츄럴		
럭스 다이애퍼 크림	상원인터내셔널		유기농 화장품 인정기준에 미달

[별첨4]

<화장품법 기재사항 위반 현황>

□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미기재 제품 현황

제품명	판매원(수입원)	위반 내용
바닐라차이 핸드 앤 바디로션	더라이프갤러리(주)	제조일자 임의제거
오트밀크 파운데이션 BB	아크네노모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미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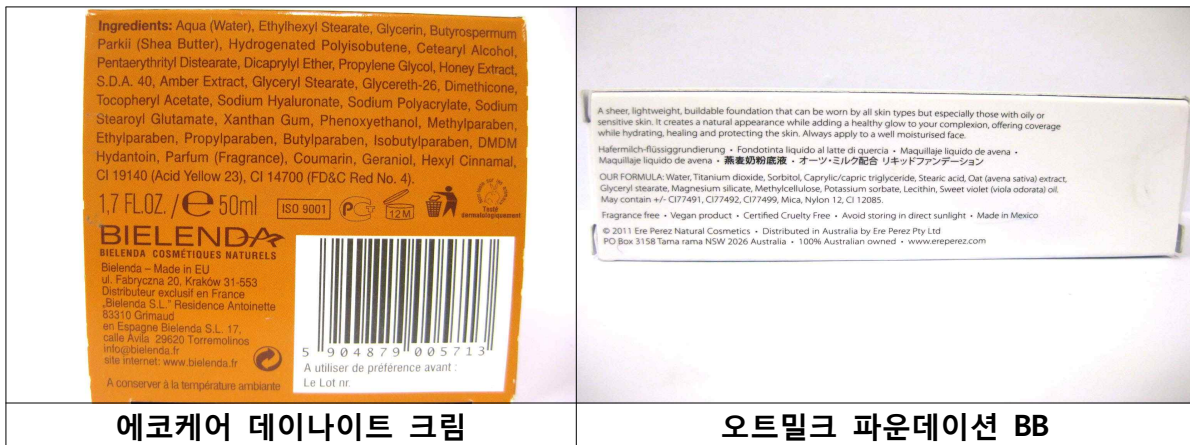


바닐라차이 핸드 앤 바디로션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미기재 제품 현황

제품명	판매원(수입원)	위반 내용
에코케어 데이나이트 크림	비엘렌다코리아	한글표시 미기재(수입)
오트밀크 파운데이션 BB	아크네노모	
유기농 플로랄 워터(화이트로즈)	유일앤컴퍼니	미기재

□ 한글표시 미기재 제품 현황



에코케어 데이나이트 크림

오트밀크 파운데이션 B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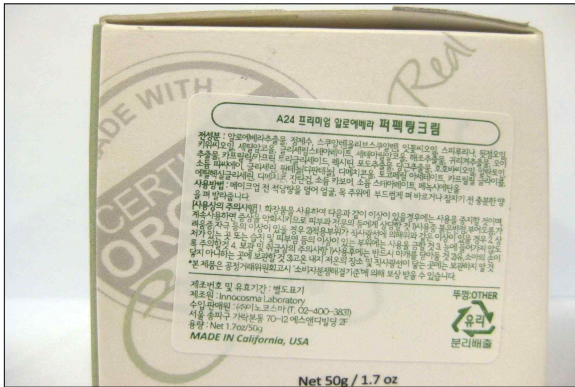
□ 성분 함량 미기재 제품 현황

제품명	판매원(수입원)	함량 미기재 성분명
칼렌둘라* 크림	(주)티인비	카렌둘라(금잔화) 추출물
프랑스 유기농 쉬어버터* 뷔르키나 바디로션	(주)웰인터내셔널	쉬어버터
A24 프리미엄 알로에베라* 퍼펙팅크림	(주)이노코스마	알로에베라 추출물
오가닉 커피빈* 아이크림	(주)뷰티랩	커피콩 추출물
톤(레몬 티트리* 위드 위치 하젤*)	이너페이스	레몬향 티트리 오일 위치 하젤 추출물
로즈* 플라워 토닉	리폼하우스	장미꽃수
오트* 밀크 파운데이션 BB	아크네노모	오트 추출물
모이스처라이징 로즈* 넥타	룩시땅코리아	장미꽃 추출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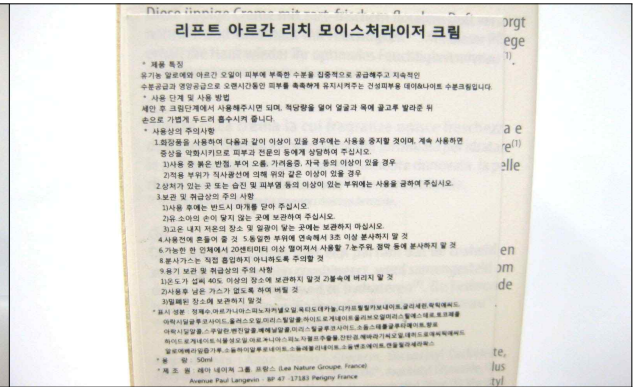
\* 제품명에 사용된 성분명

□ 성분표시가 작아 식별이 어려운 제품 현황

제품명	판매원(수입원)	비고
A24 프리미엄 알로에베라 퍼펙팅크림	(주)이노코스마	성분표시 5포인트 이하
리치 모이스처라이저 크림	리코스인터내셔널	



A24 프리미엄 알로에베라 퍼펙팅크림



리치 모이스처라이저 크림